

18~19세기 의전(衣廔)의 영업 활동과 상권 변동

이 주 영

동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전임강사

The Business Activities in *Ui-jeon* and their Effects on Commercial Power in the 18th-19th Centuries

Joo-Young Lee

Full-time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TongMyoung University

(투고일: 2009. 6. 17, 심사(수정)일: 2009. 8. 28, 게재확정일: 2009. 9. 15)

ABSTRACT

This paper summarized the forming, structure and management of the Ui-Jeon(衣廔) in Joseon Dynasty, considered the change of the commercial power of the Ui-Jeon in the 18~19th centuries. The Ui-Jeon was established the early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The Ui-Jeon merchants organized the association named Dojung(都中) and were in business with facilities like Haenrang(行廊) and Doga(都家). The Ui-Jeon was mid-sized Si-Jeon, the licensed shop(市廔). The Ui-Jeon held the monopoly of clothes. The Ui-Jeon merchants sold and bought old clothes, sold new clothes, lent the wedding dress for a bridegroom. The Ui-Jeon paid taxes and supplied clothes, goods and sewing labor for the marriage, funeral ceremonies of the royal family. The commercial power of the Ui-Jeon was threatened by free merchants(私商) named old clothes merchants(破衣商). Finally the Ui-Jeon merchants lost the exclusive right to clothes in 1791. After that, the Ui-Jeon merchants appealed to the government to give them the monopoly. The Ui-Jeon merchants regained the sole right to sell Ju-ui(紬衣), one item only, but it was temporary. Separately The Ui-Jeon merchants acquired the rights to collect the sub-taxes(分稅) from free merchants.

Key words: Ui-Jeon(의전), selling and buying of clothes(의복매매), lending of clothes(의복대여), commercial power(상권), old clothes merchants(파의상)

I. 서론

조선시대에는 초기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재화의 유통이 중기 이후부터 점차 확대되었다. 조선시대 시전은 왕실과 각 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급하고 서울 도성민의 생활용품을 조달하는 公廊商店이자 도시의 市場機構였다.¹⁾

조선 초기 그리 많지 않았던 시전은 점차 그 수가 증가되어 18세기 무렵에는 100여개가 넘는 시전이 영업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일상생활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의복을 원칙적으로 자급자족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녀자들의 가장 큰 덕목 중의 하나가 길쌈이었던 만큼 의복 재료의 생산은 물론 의복의 제조까지도 소비자가 스스로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도 다양한 재화가 상품으로 유통되었으므로 의복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시장에서 거래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시전 가운데 의복을 취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곳이 의전이다. 지금까지 시전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와 개별 시전에 관한 연구는 사학계를 중심으로 상당히 축적되어 있으나, 의전을 주제로 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각종 의복 재료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연구 성과는 어느 정도 있으나, 의복 자체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연구도 찾아보기 어렵다.²⁾

이에 조선시대 의복의 생산과 유통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의전에 주목하게 되었다. 18~19세기는 시전 외에도 지방 場市를 통한 상품의 유통이 활발하였던 시기로서 의복의 생산과 유통의 총체적인 복원을 위해서는 의복의 다양한 생산주체와 의전, 장시, 보부상 등의 유통주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의복의 생산과 유통이라는 주제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먼저 의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의전의 설립 시기, 조직과 규모를 개관하고, 의전의 영업 활동을 의복매매와 의복대여로 나누어서 고찰한 다음, 나아가 18~19세기를 중심으로 한 의전의 상권 변동 과정을 신해통공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검토하고자 한다.

의복과 관련된 시전의 범위로는 의복 재료를 취급한 시전들과 관모류나 장신구류를 취급한 시전들까

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의전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고, 연구방법은 편년사서를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방법을 취하였다.

본 논문은 의복을 둘러싼 사회경제사 내지 문화사적인 접근으로서 복식사 연구자들의 연구의 범위를 넓히고, 학제간 연구를 진전시키며, 결과적으로 복식에 관한 역사의 총체적인 복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의전의 조직과 운영

1. 의전의 설립

1) 의전의 설립 시기와 주체

의전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확인되는 最古 기록은 『승정원일기』 인조 15년(1637)의 기사이다. 기사 중에 ‘衣廩二契에 거주하는 전만호 한회운 부부가 살해당했다³⁾’라 하여 ‘의전’이라는 용어가 기록되어 있다. 의전이제는 의전상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던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미 인조대 이전에 의전이 설립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승정원일기』 영조 28년(1752)의 기록 중에 의전상인들이 조정에 상소를 하면서 ‘삼가 아뢰옵건대, 저희들은 모두 삼백년 유민으로서 성세를 만나 그 생업을 누려왔습니다⁴⁾’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 영조 28년인 1752년에서 3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1452년으로서 세종연간이 되는데, 그 주장대로라면 이미 세종대에 의전이 설립되어 있었다는 것이 된다.

한편, 『태종실록』에는 “공장은 가게가 없고 業이 專一하지 못하기 때문에 舊京에 있을 때는 布帛, 毛革, 器皿, 冠服, 鞋靴, 鞭勒 등을 店으로 나누어 크게 팔았습니다... 遷都한 이래로 雲從街에 雜處하여 남녀의 분별이 없고, 商賈가 혼잡하여, 기회와 틈을 엿보아 서로 흠치고 도둑질하기를 힘쓰니, 원컨대 京市 嚮로 하여금 한결같이 舊京의 제도에 의하게 하소서⁵⁾”라는 기사가 있어 관복이 매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의전의 설립시기는 현재까지 확인되는 最古 문헌기록상 인조대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태

의전 행량 전체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의전행량의 전체 모습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참고로 조선 후기 육의전의 행량은 적어도 100간 안팎이었고, 소소한 시전도 20~30여 간 정도는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⁰⁾

2) 의전의 규모와 국역부담

의전의 규모는 分役, 散貨額數, 상인수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1>은 의전의 상대적 규모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전 가운데 일부 시전을 선별하여 『만기요람』에 기록된 분역,²¹⁾ 『비변사등록』에 기록된 시전에 대한 산대액수,²²⁾ 『일성록』에 기록된 상인수²³⁾ 등을 정리한 것이다.

첫째, 시전은 10분에서 1분까지 국역을 부담하는 有分慶과 그렇지 않은 無分慶으로 구분되었다.²⁴⁾ <표 1>에 의하면 입전, 면주전, 지전, 저포전, 내·외어물전, 포전, 연초전 등 육의전을 비롯하여 대체로 규모가 큰 시전이 유분전에 속하였는데, 의전은 2분을 부담하는 유분전이었다.

둘째, 1784년 조정에서 시전상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해 준 일이 있는데, 산대액수로서 시전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표 1>에 의하면 산대액수는 6,000

냥에서 300냥까지 다양했는데, 의전에 대한 산대액수는 500냥이었다. 무분전의 경우에는 50냥도 있었다.

셋째, 『일성록』 정조 10년(1786) 12월 14일 기사에는 70여개 시전의 상인수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기록에 나타나 있는 상인의 숫자는 평시서 시안에 등록된 정식조합원의 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⁵⁾ <표 1>에 의하면 각 시전의 상인수는 248명에서 십 여 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의전의 상인수는 39명이었다.

이상 의전의 분역, 산대액수, 상인수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의전의 규모는 육의전 등 큰 시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영세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입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뒤 황폐화된 농촌을 떠난 많은 농민들이 서울에 유입되었고, 이들이 亂塵商人으로서 기존 시전상인과 경쟁상태에 들어가자 시전상인들은 이미 관청과 맺은 유착관계를 발전시켜 난전상인을 고발하고, 그 상품을 압수할 수 있는 금난전권을 획득하게 되었고 그 대가로 國役을 부담하였다.²⁶⁾

의전상인들도 다른 시전상인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로 국역을 부담하였다. 의전상인들은 첫째, 各宮各司에 新郎吉服²⁷⁾을 책납하였고,²⁸⁾ 둘째, 王孫,

<표 1> 18~19세기 시전의 규모 비교

시전 명칭	분역(분)	산대액수(냥)	상인수(명)
입전[선전]	10	6,000	248
면주전	8	5,000	115
지전	7	5,000	65
저포전	6	5,000	93
내어물전	5	3,500	30
포전	5	2,500	79
연초전	5	2,200	40
외어물전	4	3,500	140
망문상전	3	1,000	18
하미전	3	1,800	54
생선전	3	2,000	24
유기전[鉢里慶]	2	2,000	10
은국전	2	200	71
의전	2	500	39
면자전	2	1,000	50
화피전	1	700	11
경엽전	1	300	33

公主, 翁主, 郡主, 縣主 등의 왕실 혼례시 執雁人이 입는 有紋黑團領, 銀帶, 烏紗帽 등을 조달하였으며,²⁹⁾ 셋째, 왕실 장례시 장례 물품을 縫造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의전상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각 시전에서 침선비를 차출하여 수행하였다.³⁰⁾ 장례시 사용된 白紬甲素帳, 白紬甲素帳, 櫛宮四面揮帳, 白紬甲雲角, 白紬甲壁帳 등을 발인일에 山陵, 園所로 운반하였다가 燒火하는 일도 담당하였다.³¹⁾

Ⅲ. 의전의 영업활동

조선의 시전체제는 ‘一物一市’가 원칙이었다.³²⁾ 즉 시전에 국역을 부담시키는 대가로 특정 물종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부여하였다. 의전의 경우, 그 ‘一物’이 ‘의복’이었다. 의전의 영업활동은 크게 의복 매매와 의복 대여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의복 매매

1) 헌옷[破衣, 弊衣] 매매

의전은 헌옷을 매매하였다. 『시폐』에 의하면 의전은 파의 1종을 취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³³⁾ 『우서』에도 “弊衣를 팔고자 하는 사람은 衣肆에 가고”라는 표현이 있다.³⁴⁾

의전이 취급한 파의의 종류는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종실록』에는 “궁궐에 침입하여 옷을 훔친 도둑이 의전상인에게 서양에서 들여온 木棉으로 만든 여자 저고리, 서양에서 들여온 목면 치마를 팔았다”³⁵⁾는 기사가 보인다. 의전이 취급한 의복의 재질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의전상인들은 목면파의를 자신들의 물종이라고 所懷하기도 하였고,³⁶⁾ 신해통공 후 紬緞衣에 대하여 금난전권 복구를 요청하여 紬衣에 대한 금난전권을 회복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의전이 취급한 파의의 재질도 木棉, 紬緞 등으로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 새옷[完衣] 판매

의전이 새옷[完衣]을 취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문헌기록상 명확하지 않아서 ‘의전의 영업내용’이 ‘의류

대여업 및 헌옷 판매’로 정리되기도 하고,³⁷⁾ ‘의전의 취급상품’이 ‘남녀 의복 및 헌옷 종류[파의]’로 정리되기도 한다.³⁸⁾ 그런데 의전이 헌옷 뿐 아니라 새옷도 취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를 다음 여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조선후기 시전을 설명하고 있는 문헌 중 『동국여지비고』에는 ‘賣男女所着衣服’³⁹⁾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한경지략』에는 ‘衣廩賣各衣服’⁴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위 문헌들에는 의전의 취급상품이 ‘衣服’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뿐, 파의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다.

『승정원일기』 영조 34년(1758) 5월 25일조에는 흥봉한이 의전에 관하여 영조에게 아뢴 내용이 있다. 즉, “의복매매는 비록 의전에서 하는 바이지만, 파의류[破破之屬]에 있어서는 반드시 가혹하게 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臣은 그것은 각자 판매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고, 만약 이로 인해 完衣를 亂賣한다면 난전물로써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어제 회람할 때에 무뢰배들이 감히 파의로서 시전을 만드는 일을 가지고 임금 앞에서 호소하고자 어가 앞으로 함부로 나타났는데, 병조에서 막음으로써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무릇 시전을 이미 설립한 경우는 이를 혁파하기 곤란하고, 결코 여러 가지로 추가로 설립할 수 없는데, 하물며 의전 외에 파의전을 설립하려고 청하는 것은 진실로 매우 외람된 일입니다.”⁴¹⁾라는 대목이다. 의전이 의복을 매매하였고, 그 의복에는 새옷과 헌옷이 모두 포함되었음을 추측케 하는 내용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영·정조대 이후의 『실록』, 『일성록』, 『비변사등록』, 『시폐』등의 문헌기록에는 주로 破衣가 언급되고 있어 마치 의전에서 파의만 취급한 것으로 오인되었는데, 이처럼 파의만 거론된 이유는 위 기록들이 대부분 의전과 파의상 사이의 상권분쟁과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즉 의전상인들은 파의상과 상권분쟁을 하였던 파의를 자신들의 물종이라고 주장하면 족하였고, 상권분쟁의 대상이 아니었던 새옷에 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의유당관복유람일기(1772)』 중 〈동명일기〉

에 의유당이 시전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 있다. “짐짓 서문을 나서 남문 밖을 돌아가며 쌍교마를 천천히 놓아 좌우 저자를 살피니 거리 여섯 저자 장안낙중과 다름이 없고, 의전, 백목전, 채마전 각색 전이 반감희하여 고향 생각과 친척 그리움이 배하더라. 포전, 백목전이 더욱 장하여 필필이 건 것이 몇 천동을 내어 건 줄 모르겠더라. 각색 옷이며 비단 금침을 다 내어 걸었으니 日色에 눈부시더라”⁴²⁾라는 대목이다. 의유당은 시전 행랑의 모습을 장안 낙중과 다름이 없다고 표현하면서 특히 의전, 백목전, 포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만일 의전이 현옷을 쌓아 놓고 팔았던 점포였다면, ‘내어 걸린 각색 옷이 햇빛에 눈이 부시더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무오연행록(1798)』에는 “의복 파는 시장을 지나니, 다 재상이 입는 鱗龍이며 온갖 선명한 의복을 두 줄에 걸었는데 보니 찬란하고, 그 밖 낡은 의복도 또한 길가에 산같이 쌓였도되...”⁴³⁾라는 청나라 연경의 시장 모습을 묘사한 내용이 있다. 즉 연경의 옷가게에서는 새옷과 현옷을 같이 취급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당시 조선의 의전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우서(1737)』에도 “무릇 점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大商이 있어서 資本을 많이 내어 점포를 크게 차려야만 물화가 다투어 물려들어 비로소 번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큰 점포라는 곳에는 밥, 술, 기름, 간장, 국수, 떡, 三牲肉 등을 파는 점포와 磨坊, 米坊, 약방, 책방, 그리고 비단, 명주, 무명, 삼베, 모시, 가죽, 털, 筋角, 魚鹽, 銅鐵, 材木, 顔彩, 종이와 짜놓은 棺槨, 지어놓은 의복[現成之衣服], 새로 나온 과실, 닭, 거위 등의 물건을 파는 상점과 醫卜, 工匠, 役人, 脚夫와 같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구비되고 물건들이 신선하여야만 交易의 길이 비로소 번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 같은 점포가 있는 곳이 몇이나 되는가라고 묻고, 오늘날 서울의 시전에는 이들 상품이 대개 갖추어져 있다”라고 답하는 내용이 있다.⁴⁴⁾ 위 내용은 당시 한양의 상황을 묘사한 글은 아니지만, 한양에 ‘지어 놓은 의복’ 즉 새옷을 판매하는 가게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다섯째, 전술한 <그림 2>의 《太平城市圖》중 의전을 보면, 점포에 판매할 옷이 전시되어 있고, 점포 앞에서 손님들이 옷을 입어보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옷의 진열상태를 보면 새옷을 묘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섯째, 의전이 신랑길복[신랑관대, 신랑단령]을 책납·대여하였고, 왕실 혼례시 의복을 조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새옷을 제조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의전이 판매한 새 옷의 종류는 명확하지 않지만, 특별한 제한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후기 이옥(1760~1815)의 『市奸記』에는 “서울에 세 군데 큰 장이 서는데, 동쪽은 배오개, 서쪽은 소의문, 중앙은 운종가이다. 모두 좌우 양편으로 전을 벌여 별처럼 늘어서 있다. 온갖 장인이며 장사치가 저마다 가진 것을 가지고 와서 사방의 物貨가 구름처럼 물려들고 물처럼 흘러든다. 사람들은 관대, 의복과 신발, 음식 등을 여기서 구입한다”⁴⁵⁾라는 내용이 있다. 원문에는 ‘...民得冠帶衣履飲食...’이라고 하여 ‘冠帶’와 ‘衣’가 구별되어 있다. 통상 관대는 관복을 지칭하는 용어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의전에서 일반 의복과 함께 관복도 취급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2. 의복 대여

의전은 신랑길복[신랑관대, 신랑단령]을 대여하였다⁴⁶⁾. 조선시대에는 혼례시 필요한 각종 물품을 대여해 주는 풍속이 있었고,⁴⁷⁾ 시전 중에는 혼례물품을 대여해 주는 賁物塵도 있었다.⁴⁸⁾

『시폐』에 “단지 新郎冠帶에 있어서는 빌려주고 돈을 받는[給賁] 관례가 있다... 근래에 세력있는 집안의 혼례시 새로 만든 최상품을 賁納한다... 본전의 신랑단령을 세력있는 집안에서 반드시 구하는데 上司의 하인들이 반드시 새상품을 구한다”⁴⁹⁾라는 표현이 있고, 『일성록』에도 “의전시민들이 말하기를 저희 의전은 만들어 둔 길복을 돈을 받고 빌려 주어 먹고 삽니다”⁵⁰⁾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의전이 신랑길복[신랑관대, 신랑단령]을 대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의전은 신랑길복[신랑관대, 신랑단령] 대역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시폐』에 “근래에 세력있는 집안의 혼례시 새로 만든 최상품을 책납하라고上司의 사령과 의금부의 나장들이 시전에 모여 와서 위협하고 소란을 일으킨다. 새상품은 한도가 있어서 한 두 차례 사용한 후에는 곧 모두 색이 바래므로 모두 새상품을 원한다… 給費錢은 왕래하는 하인이 절반은 떼어먹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해마다 부담하고 있는 紗의 값이 적어도 400~500냥 이상이다. 이로 인해 전후로 진 빛이 수천 냥에 이르니 이는 참으로 열악한 시전이 지탱하기 힘든 폐단이다”⁵¹⁾는 내용이 있어 의전이 세도가의 새옷 책납요구에 시달리고, 급세전을 받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성록』에도 혼례가 많이 겹치는 날에 各宮各司에서 모두 새옷을 책납할 것을 요구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를 하여 조정에서 이를 엄금하는 신칙을 여러 번 내렸으나, 제대로 근절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보이기도 한다.⁵²⁾

한편, 조선시대에는 혼례시 일회용으로 쓸 물건이나 개인이 마련하기 힘든 물품은 관아나 軍門에서 빌리도록 하였는데, 양반은 물론 상민이 혼례 물품을 관아에서 빌릴 수 있던 것은 혼인이 백성을 잘 정착시켜 양인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꾸준히 추진된 결과였다.⁵³⁾ 전술한 바와 같이 의전은 各宮各司에 신랑길복[신랑관대, 신랑단령]을 책납하였는데, 各宮各司는 책납받은 신랑길복을 양반과 상민들의 혼례시 무료로 빌려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IV. 의전의 상권 변동

18세기 중엽부터 기존의 시전상인들과 새로운 私商人들인 난전상인들 사이에서 시전상인들의 독점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시전상인들 상호간에서도 독점권의 범위를 둘러싸고 분쟁이 빈발하였다. 그 과정에서 시전의 독점권이 점차 축소·폐지되었다. 의전도 파의상과 상권분쟁을 하면서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었다.

1. 신해통공(1791) 이전 의전의 상권

시전상인들의 금난전권은 임란이후에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체로 금난전권은 17세기 이후 상품유통이 확대되면서 사상인들이 성장하여 시전과 마찰을 초래하자, 시전인들이 상권보호를 위해 정부에게 시역부담을 매개로 독점상업권으로서의 금난전권을 확보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⁵⁴⁾ 난전인 捉納權과 난전물 屬公權을 주내용으로 하면서 시전상인들의 매매독점권을 보장했던 금난전권은 대체로 17세기 말기에 주요 시전을 중심으로 창설된 것이고, 18세기 전반에 이르러 모든 시전에 확대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⁵⁵⁾ 의전의 금난전권도 대체로 17세기 이후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위 시기에 의전 난전의 활동이 활발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는 영조 17년(1741)各司, 宮房, 軍門 등에 의해 빚어진 시전상인의 落本이나 遺在의 구체적인 실태를 소상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거친 후 시전인 弊穢別單을 작성하였는데,⁵⁶⁾ 이 폐막별단에 의전에 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시폐』에는 영조 29년(1753)에 시전상인들의 시전의 폐단과 관련한 상소 내용과 그에 대한 조정의 조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폐』에 나타난 의전의 상소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신랑길복[신랑관대, 신랑단령] 給費와 관련한 폐단과 시정요구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의전은 신랑길복[신랑관대, 신랑단령]을 대역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세력있는 집안의 혼례시 새로 만든 최상품을 요구하고, 왕래하는 하인들이 給費錢을 중간에서 떼어 먹거나 심지어 지급하지 않아 해마다 부담하는 紗의 값이 적어도 400~500냥 이상이 되어 수천 냥에 이르는 빛을 지고 있어 그 폐단을 시정해 달라는 것이다.⁵⁷⁾

둘째, 난전의 폐단과 시정요구이다. 의전의 난전은 세력을 믿고 무례한 무리들이 이현, 종루, 서소문 밖 등지에서 마음대로 장사를 하고, 조금도 거림없이 법에 따라 엄금하려고 하면 도리어 심하게 행패를 부리니 잔악하고 지친 의전상인들이 감히 금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⁵⁸⁾

의전상인들은 위 두 가지 폐단으로 인하여 의전을 철폐하고자 하는 뜻을 평시서에 애통하게 호소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닌데도 허가를 받지 못하여 빈 점포를 헛되이 지키는 것이 결코 오래 가지 못할 형편이라면서 다른 시전이 이미 금단하였듯이 의전에게도 시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⁵⁹⁾ 의전의 난전은 대개 廳衛廳 군졸에 의한 것이었는데, 영조는 군졸들의 의전 설립을 허가할 수 없다는 전교를 내리기도 하였다.⁶⁰⁾

영조 40년(1764)에 보민사절목을 제정하여 금난전권의 범위를 축소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며 도고 상업의 방지를 위한 통공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보민사절목이 제정됨에 따라 9개 시전에 대해서는 한성부가 이전처럼 출금을 하고, 의전 등 8개 시전(外魚物塵, 鞋塵, 四床塵, 眞絲塵, 衣塵, 鉢里塵, 隅塵, 內貫器塵)은 본전인이 提告하여 勸律하는 권한, 즉 난전상인을 체포하여 처벌을 구하는 권한만 인정되었고, 나머지 시전의 금난전권은 폐지되었다.⁶¹⁾

그런데 정조 10년(1786) 3월 24일조 기사에 의하면 “근래에 백성들은 날로 늘어나는데 백성들의 자산은 점점 바닥나 가고 있으니, 그것은 소비하는 자가 많고 온갖 방법으로 이익을 독차지하기 때문입니다. 9塵에 대해 한성부에서 禁條를 내고, 5塵에 대해서는 시전 사람들로 하여금 붙잡아 마치게 한 것은 그 법의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各塵의 명색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번잡하여 亂塵을 금지하면서 일체 9塵의 예를 썼는데, 강변에 사는 백성의 하소연으로 보더라도 누룩 조각을 머리에 이고 오는 시골 노파조차도 모두 난전으로 들어가니, 그 나머지가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금해야 할 것은 예전대로 금해야 합니다. 심지어 뒤따라 자질구레하게 들어선 가게에 대해서조차 대뜸 9건의 예를 적용하여 모두 한성부에서 금조를 내고 있으니, 백성들이 어찌 처신할 수 있겠습니까. 貢市堂과 該署(평시서를 가리킨다)의 제도가 충분히 상의하여 확정한다면 한성부와 의논하되, 한결같이 옛 법식대로 따르는 것이 事宜에 합당할 듯 합니다.”⁶²⁾라는 기사가 있다. 위 기사에 따르면, 영조 40년(1764) 보민사절목이 제정될 당시에는 본전인이 난전행위를 착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시전이 8개였으나, 정조 10년(1786)에는 5개로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⁶³⁾

의전의 경우 정조 12년(1788) 1월에 내·외어물전, 혜전, 의전, 연초전 시민 등이 난전이 심하니 법전에 따라 엄금해 줄 것을 요청하는 所懷를 하였다(기사,⁶⁴⁾ 정조 12년(1788) 9월에 의전상인이 족두리전 여인들과 함께 의전물종을 판매하는 남자를 체포하여 京兆에 법에 따라 처벌을 구했다는 기사⁶⁵⁾ 등에 비추어 볼 때, 신해통공(1791) 이전까지 금난전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2. 신해통공(1791) 이후 의전의 상권

1) 금난전권의 상실과 복권 요청

정조는 정조 15년(1791) 채제공(1720~1799)의 권의를 받아들여 육의전을 제외한 모든 시전을 대상으로 금난전권을 폐지하였고, 이에 따라 의전의 금난전권도 폐지되었다.⁶⁶⁾

금난전권이 폐지되자 의전상인은 순막시 금난전권을 복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즉 정조 20년(1796) 11월 30일에는 면자전, 화피전, 연초전, 의전 시민들이 금난 후 失業을 하게 되었다면서 금난전권을 복구하여 自生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⁶⁷⁾ 정조 22년(1798) 1월 4일에는 어불전, 면자전, 연초전, 의전 시민들이 금난 후 모두 실업을 하였으니 복구하여 자생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⁶⁸⁾ 정조 23년(1799) 3월 22일에는 내외어물전, 진사전, 잠철전, 면화전, 장목전, 마리전, 내외시전, 화피전, 의전, 연죽전, 연초전, 치계전, 청밀전, 혜전, 족두리전, 내세기전 시민들이 통공 이래 시민들이 날로 어려워진다면 이전과 같이 금난을 하여 업을 보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⁶⁹⁾ 그러나 조정에서는 이러한 요청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금난전권을 보장받았던 육의전은 고종 27년(1890)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에 의해 값싼 상품이 쇠도하게 되자 상품독점권을 완전히 잃게 되었고, 결국 고종 31년(1894) 갑오개혁 이후에는 누구나 자유로운 상업행위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⁷⁰⁾

2) 파의상에 대한 분세징수권 인정

위와 같이 금난전권 회복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시전상인들은 난전에 대한 수세권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즉 시전들은 전매독점권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역을 부담하여야 했으므로 난전에 대한 분세 징수를 통해 국역부담을 줄이하고자 한 것이다.

의전은 순조 3년(1803)에 들어서 파의상에 대하여 분세징수권을 인정받았다. 의전 등 16개 유분각전 시민들이 신해통공 이후 모두 실업하였으므로 금난전권을 회복시켜 주든지 면역케 해 달라고 요청을 한 데 대하여, 평시서에 분부하여 난전인에게 적당한 액수를 수세하도록 하였다.⁷¹⁾ 의전상인들은 파의상에 대하여 매월 초하루에 분세로 한 냥씩 거두었다.⁷²⁾

고종 1년(1863) 5월 1일 기사에 “파의상들이 ‘여러 종류의 헌옷을 본래 의전과 함께 매매하고 있었는데, 근래에 의전에서는 도거리하여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고 또 세금을 더 정해놓고는 매월 초하루에 한 냥씩 억지로 받고 있으니 특별히 전호를 따로 세워서 市案에 기록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후로 송사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파의상들의 패소로 귀결된 것이 여러 번이니 내버려 두소서”라고 한 기사⁷³⁾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의전의 파의상에 대한 분세 징수는 고종대 까지 계속 인정되었음이 확인된다.

3) 紬衣 1종에 대한 전매독점권 회복

의전은 파의상에 대한 분세징수권을 확보하는 한편, 순조대부터 현종대에 이르기까지 매년 순막시마다 紬緞衣 1종만이라도 전속케 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⁷⁴⁾ 결국 현종 3년(1837)에 의전은 紬衣 1종에 대한 主賣權을 회복하게 되었는데, 당시 紬緞衣도 통공 후이니 의전에 전속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나, 다만 시세의 회복을 위해 임시로 1종만을 主物로 하도록 한 것이었다.⁷⁵⁾ 그런데 고종 28년(1891) 의전상인들이 紬緞衣 1종에 대하여 다시 금난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⁷⁶⁾ 현종 3년의 紬衣 1종에 대한 의전의 主賣權 조치는 임시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이상으로 18~19세기 의전의 영업 활동과 상권 변동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선시대 의전은 문헌기록상 인조대 이전에 설립되어 의복의 생산 및 유통기구의 역할을 하였는데, 의전의 설립시기는 조선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전은 의복 관련 장인이 독자적으로 설립하였거나 상인들과 동업하여 설립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전은 다른 시전과 마찬가지로 도중이라는 동업조합과 都家, 행랑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업활동을 하였는데, 의전행랑은 2층 목조기와집 구조로 건설되었고, 1층 점포에서는 의복을 매매하였고, 2층에는 의복을 보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의전의 규모는 분역, 산대액수, 상인수 등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의전은 국역 2분을 부담하는 유분각전이고, 산대액수는 500냥, 상인수는 39명 정도로서 그 규모가 육의전 등 큰 시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영세한 것은 아니고 전체 시전 가운데 중간 정도의 규모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3. 의전은 의복에 대한 전매독점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다양한 형태의 국역을 부담하였다. 의전상인들은 첫째, 各宮各司에 신랑길복[신랑관대, 신랑단령]을 책납하였고, 둘째, 王孫, 公主, 翁主, 郡主, 縣主 등의 왕실 혼례시 執雁人이 입는 有紋黑團領, 銀帶, 烏紗帽 등을 조달하였으며, 셋째, 왕실 장례시 사용되는 장례 물품을 縫造하거나 발인일에 山陵, 園所로 운반하였다가 燒火하는 일도 담당하였다.

4. 의전은 의복에 대한 전매독점권을 가지고 영업을 하였는데, 영업활동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의전은 의복을 매매하였다. 의전은 헌옷[破衣, 弊衣]을 매매하고, 새옷[完衣]을 판매하였는데, 헌옷과 새옷은 종류와 재질면에서 제한없이 다양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의전은 의복을 대여하였다. 의전은 혼례시 신랑길복[신랑관대, 신랑단령]을 給費, 즉 빌려주고 돈을 받았다. 의복은 한두 번 입으면 곧 바래지는데, 당시 세력있는 집안에서는 반드시 새로 지은 최상품을 요구하였고, 특히 혼례가 많이 겹치는 날에

는 여러 곳에서 모두 새상품으로 책납할 것을 요구하여 의전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5. 의전은 의복에 대한 전매독점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나, 18~19세기에 들어서 신랑길복[신랑관대, 신랑단령]의 급세와 관련한 폐단과 파의상들로 인한 폐단을 겪으면서 상권이 점점 위축되었다. 결국 의전상인들은 정조 15년(1791년)에 시행된 신해통공으로 의복에 대한 전매독점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후 조정에 전매독점권 회복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전상인들은 전매독점권 폐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던 국역부담을 줄이고자 순조대에서 고종대까지 파의상에 대한 분세징수권을 인정받아 매월 초하루에 분세로 한 냥씩을 받았으며, 현종대에는 紬衣 1종에 대한 전매독점권을 일시적으로 회복하여 상권을 유지하였다.

본 논문은 조선시대 의전의 영업 활동과 상권 변동에 관한 개괄적인 연구로서, 의전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18~19세기의 의전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시간적 한계를 가진다. 본 논문을 계기로 의전을 비롯하여 복식 관련 물품을 취급하였던 다른 시전들에 관한 연구와 지방 장시, 보부상 등 의복 유통에 관련한 다양한 상업주체에 관한 연구, 그리고 복식의 생산주체에 관한 연구 등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조선시대 복식의 생산과 유통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역사의 총체적 복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卞光錫 (2001). *朝鮮後期 市廛商人 研究*. 혜안, p. 25.
 2) 고동환 (2007). *조선시대 서울도시사*. 태학사.
 박평식 (1999). *조선전기상업사연구*. 지식산업사.
 卞光錫 (2001). *앞의 책*.
 이태진, 서성호, 고동환, 한상권, 고석규, 이현창, 전우용, 김태웅, 허영란 (2000). *서울상업사*. 태학사.
 임인영 (1977). *이조어물전연구*. 숙대출판부.
 고동환 (2002). *조선후기 시전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고동환 (2008).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면주전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32.
 변광석 (2002). 18~19세기 도자전의 상권과 시전체제의 추이. *지역과 역사*, 10.
 이 옥 (1996). 18세기말 짜전 구조와 미곡유통. *한국사학보*, 1.

임인영 (1986). 이조시전에 있어서 여인전연구. *숙명여대 경제연구소 논문집*, 15.
 3) *承政院日記*. 인조 15년 12월 25일. 「衣廩二契居前萬戶韓希雲夫妻爲人被殺」.
 4) *承政院日記*. 영조 28년 12월 17일. 「伏以臣等俱以三百年遺民幸逢聖世樂其生業」.
 5) *太宗實錄*. 태종 10년 1월 28일. 「工不居肆業不能專故舊京之時布帛毛革器皿冠服鞋靴鞭勒分店大市至市牛馬亦有常所其他米穀之類則各於所居自遷都以來雜處雲從之街男女無別商賈混淆窺覘隙務相攘竊願令京市署一依舊京之制」.
 6) 박평식. *앞의 책*, pp. 83-85.
 7) 『*經國大典*』 공장조에 의하면, 의복 제조에 종사하는 공장은 옷띠를 만드는 多綸匠, 금박을 넣는 金箔匠, 皮物을 다루는 이피장·숙피장·서피장·생피장, 모피로 옷의 부분품을 만드는 모의장, 옷에 금사를 넣는 사금장, 의료의 염색을 맡는 하염록장·청염장·홍염장·초염장, 매듭을 만드는 每縞匠, 재봉을 담당하는 침선장. 실을 다루는 합사장·연사장, 댕기를 만드는 都多益匠 등으로 세분되어 있다. 침선장은 경공장으로서 호조 소속 침선장이 6명, 상의원 소속 침선장이 40명, 제용감 소속 침선장이 24명이었다.
 8) *東國輿地備考*. 제2권, 한성부. 「衣廩在雜穀廩西雜穀廩在鐵物橋西邊南北」.
 9) 이중화 (1929). *경성시전의 변천*. 별건군, 23. 자료검색일 2009.3.27. 자료출처 <http://history.go.kr>
 10) 이태진, 서성호, 고동환, 한상권, 고석규, 이현창, 전우용, 김태웅, 허영란. *앞의 책*, p. 231.
 11) 고동환 (2002). *앞의 논문*, p. 67.
 12) *위의 논문*, pp. 72-73.
 13) *承政院日記*. 영조 28년 12월 17일.
 14) *日省錄*. 정조 10년 12월 14일.
 15) *日省錄*. 정조 12년 9월 8일.
 16) *大朝鮮獨立協會會報*. 제8호, 1897년 3월 15일. 「獨立協會補助金收入人名」. 자료검색일 2009.3.27. 자료출처 <http://history.go.kr>
 17) 고동환 (2002). *앞의 논문*, pp. 86-90.
 18) 국립중앙박물관 (2002). *朝鮮時代 風俗畫*, p. 59.
 19) *承政院日記*. 영조 47년 3월 28일. 「日前衣廩十六間竝草家七間又被回祿之災其所顯恤」.
 20) 국사편찬위원회 (2005). *거상*. 전국 상권을 장악하다. *두산동아*, p. 148.
 21) *萬機要覽*. 권5. 財用, 各廩, 有分各廩.
 22) *備邊司謄錄*. 정조 8년 3월 21일. 「市民錢貨散貸別單」.
 23) *日省錄*. 정조 10년 12월 14일.
 24) 무분전은 지역의 부담이 없는 시전을 가리킨다는 견해와 지역의 부담은 있으나 그 부담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시전을 가리킨다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卞光錫 (2001). *앞의 책*, p. 30.)
 25) 고동환 (2007). *앞의 책*, p. 139.
 26) 자료검색일 2009.3.27. 자료출처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27) 『*備邊司謄錄*』 철종 14년 1월 15일에는 '新郎吉服'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市弊'에는 '新郎冠帶', '新郎團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문맥상 길복과 관대는 단령

- 을 지칭하는 용어로 보인다.
- 28) 備邊司謄錄. 철종 14년 1월 15일. 「衣塵市民等以爲新郎吉服責納之弊依前判下嚴飭各宮各司」
 - 29) 吉禮要覽. 王孫嘉禮. 「平市署 (執雁人所着有紋黑團領衣塵雙鶴胸背立塵銀帶衣塵玉貫子望門牀塵黑靴子鞋塵烏紗帽衣塵網巾網巾塵以上還下徵氏六人網巾六牽馬夫二名網巾各一)」; 吉禮要覽. 公主嘉禮. 「平市署 (執雁忠贊衛所着有紋黑團領以上衣塵烏紗帽工曹雙胸襟立塵玉貫子望門牀塵黑靴子鞋塵烏紗帽工曹看品捧上縫造具纓子給雁夫)」; 吉禮要覽. 翁主嘉禮. 「平市署 (執雁忠贊衛所着有紋黑團領銀帶以上衣塵烏紗帽工曹雙胸襟立塵玉貫子望門牀塵黑靴子鞋塵 網巾本塵工曹看品捧上縫造具纓子給雁夫)」; 吉禮要覽. 郡主嘉禮. 「平市署 (執雁人所着有紋黑團領衣塵雙鶴胸背立塵銀帶衣塵玉貫子望門牀塵黑靴子鞋塵烏紗帽衣塵網巾工曹)」; 吉禮要覽. 縣主嘉禮. 「平市署 (執雁人所着有紋黑團領衣塵雙鶴胸背立塵銀帶衣塵玉貫子望門牀塵黑靴子鞋塵烏紗帽衣塵網巾纓子耳味介具一網巾塵牀塵立塵以上還下)」 자료검색일 2009.3.27. 자료출처 <http://e-kyujanggak.snu.ac.kr>
 - 30) 獻敬忠嬪 顯隆園園所都監儀軌. 순조 15년. 「殿內三間入排白紬甲仰帳橫宮前面左右挾間六幅白紬甲帳四件: 六幅帳二件上端裏以十二尺二寸竹兩端貴以單環懸於樑底: 東西外壁十一幅白紬甲帳二件: 以上各種魂宮移用件衣塵市人領來針線之各塵女人添補縫造排設」
 - 31) 文祖 綏陵山陵都監儀軌. 헌종 12년 「燒火秩 白紬甲素帳一件: 橫宮上所覆: 白紬甲素帳四件: 橫宮四面揮帳: 白紬甲雲角四件: 以上還殘廢排設件發引日撤排衣塵市民次知輪納于山陵入用後燒火: 純元王后 仁陵山陵都監儀軌. 철종 8년 「燒火秩 白紬甲素帳一件: 橫宮上所覆: 白紬甲素帳四件: 橫宮上面揮帳: 白紬甲雲角四件 白紬甲壁帳: 以上魂殿排設件發引日撤排衣塵移排後燒火: 神貞王后 綏陵山陵都監儀軌. 고종 27년 「燒火秩 白紬甲素帳一件: 橫宮上所覆: 白紬甲素帳四件: 橫宮上面揮帳: 白紬甲雲角四件白紬甲壁帳: 以上魂殿排設件發引日撤排衣塵移排後燒火」 자료검색일 2009.3.27. 자료출처 <http://e-kyujanggak.snu.ac.kr>
 - 32) 各塵記事. 地. 辛未 2월. 「一物之貨不得分設於兩肆者」
 - 33) 市弊. 의전. 「矣徒塵所業之貨只破衣一物」
 - 34) 迂書. 제8권. 論商販事理額稅規制. 「賣弊衣者赴衣肆」
 - 35) 承政院日記. 고종 6년 10월 22일. 「왕대비전 침방에서 훔친 서양에서 들여온 목면으로 만든 여자 저고리 2벌, 서양에서 들여온 무늬있는 비단 치마 하나, 서양에서 들여온 목면치마 하나는 모두 9냥을 받고 의전 시인에게 팔았고, 궁중전 나인 방에서 훔친 남색 명주 치마 하나, 서양에서 들여온 목면으로 만든 푸른 치마 하나, 生木 치마 둘, 옥색 명주 회장저고리 둘, 白洋木 회장저고리 둘은 모두 9냥을 받고 破衣商에게 팔았다」
 - 36) 承政院日記. 영조 33년 1월 5일. 「衣塵市人口各塵亂塵尤甚之中衣塵亂塵則皆是扈衛廳軍卒而三門外梨峴屏門鍾路街上肆然設市已極可痛扈衛廳則以本塵物種木綿破衣奪給軍卒之意論報備局不但亂塵不禁本塵物種還爲見奪豈不萬萬冤痛乎」
 - 37) 이태진, 서성호, 고동환, 한상권, 고석규, 이현창, 전우용, 김태웅, 허영란. 앞의 책. p. 233.
 - 38) 卞光錫 (2001). 앞의 책. p. 36.
 - 39) 東國輿地備考. 2권, 한성부, 시전.
 - 40) 漢京識略. 시전.
 - 41) 承政院日記. 영조 34년 5월 25일. 「衣服賣買雖是衣塵之所次知至於破破之屬不必苛禁故臣果許其各自發賣若因此而亂賣完衣則輒以亂塵律嚴繩矣日昨回鑾時無賴頑民輩敢以破示設塵事欲爲御前呼訴至於突入駕前因兵曹之禁防不得售計云 凡市塵既設者雖難革罷決不可種種加設況衣塵之外又設破衣塵之請誠極狠濫」
 - 42) 류준경 (2008). 의유당관복유람일기. 신구문화사, pp. 181-182.
 - 43) 戊午燕行錄. 제5권, 정조 23년 2월 6일.
 - 44) 迂書. 1권, 總論四民. 附金相垣甲申上疏. 「夫所謂店鋪云者必有大商出其重本廣設店面然後物貨之輾集者方可殷盛也所謂小店鋪者有飯店酒店油醬麪餅三牲肉店磨坊米坊藥鋪書肆錦段綿麻苧皮毛筋角魚鹽鋼鐵材木顏彩紙地已造之棺槨現成之衣服時新菓實鷄鴨品味醫卜工匠役人脚夫之類色色俱備物物皆新然後交易之道方可殷盛而我國商販之地如此者幾處 或曰即今京都市肆此等販賣之物大抵皆有」
 - 45) 실시학사 고전문화연구회 번역 (2009). 완역 이옥전집 01. 휴머니스트, p. 303.
 - 46) 사로상에는 신랑길복, 신랑관대, 신랑단령 등의 표현만 나타나고 있어 의전에서 신부 혼례복을 대어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 47) 조호순 (1989). 조선시대복식풍속사연구. 일지사, pp. 353-354.
 - 48) 東國輿地備考. 2권, 시전. 「貫物塵在各處都家在惠政橋南貫給婚喪諸具」
 - 49) 市弊. 의전. 「只在於新郎冠帶給貫一節… 近來勢家之婚禮時俱以新造極品責納… 本塵新郎團領勢家必得上司下屬威脅塵人必使新造以用」
 - 50) 日省錄. 순조 7년 2월 25일, 순조 18년 1월 25일. 「衣塵市民等以爲渠塵造置吉服給貫資生」
 - 51) 市弊. 의전. 「近來勢家之婚禮時俱以新造極品責納上司使令禁府羅將等宰于塵井咆哮作挾新件有限而一二次經用之後則舉皆滌色皆求新造出牌捉囚浮費無算是白乎稱應給貫錢段半失於往來下人之手且有全不給者故年年所負紗價錢小不下四五百兩因此而前後負債至於累千兩此實殘市難支之弊事」
 - 52) 日省錄. 순조 7년 2월 25일. 「若當婚禮稠疊之時則諸處責納皆是新件故其間弊端罔有紀極捧甘各司切勿侵責事也年前已自本司甘飭而責納新件之弊又復如前更爲捧甘各司各別申飭勿侵: 日省錄. 순조 18년 1월 25일 「若值過婚偏多之日則諸處皆以新件責納年前詢曉時特蒙嚴飭之命而弊復如前更飭各宮各司切勿侵責事也」
 - 53) 국가사편위원회 (2005). 혼인과 연애의 풍속도. 두산동아, p. 155.
 - 54) 卞光錫 (2001). 앞의 책. p. 65.
 - 55) 이태진, 서성호, 고동환, 한상권, 고석규, 이현창, 전우용, 김태웅, 허영란. 앞의 책. p. 191.
 - 56) 卞光錫 (2001). 앞의 책. pp. 109-112.
 - 57) 市弊. 의전. 「近來勢家之婚禮時俱以新造極品責納上司使令禁府羅將等宰于塵井咆哮作挾新件有限而一二次經用之後則舉皆滌色皆求新造出牌捉囚浮費無算是白乎稱

應給貫錢段半失於往來下人之手且有全不給者故年年所負紗價錢小不下四五百兩因此而前後負債至於累千兩此實殘市難支之弊事」

- 58) 市弊. 의전, 「衣塵之亂塵自怙勢無賴之徒屯聚於梨峴鐘樓西小門外等… 恣意亂賣少無忌憚而依法禁戢則又噉極酷故殘疲市民不敢禁斷」
- 59) 市弊. 의전, 「兩件業自在破歸故不得不罷市之意哀訴本署者前後累次未蒙許施徒守許施決無長久之勢事他塵已爲禁斷一體施行」
- 60) 承政院日記. 영조 33년 1월 5일, 「衣塵市人曰各塵亂塵尤甚之中衣塵亂塵則皆是扈衛廳軍卒而三門外梨峴屏門鍾路街上肆然設市已極可痛」; 備邊司謄錄. 영조 33년 1월 5일, 「傳曰都民不過貢人市人而已市人自市人扈衛廳軍自軍人 衣塵自在市民扈衛廳豈有報備局之義哉頃年一塵因大將所奏設焉旋即除之況此塵已有禁者乎勿施事分付備局」
- 61) 備邊司謄錄. 영조 40년 10월 27일, 保民司節目, 「京兆從前應出禁九塵外魚物塵鞋塵四床塵眞絲塵衣塵鉢里塵隅塵內貫器塵八塵則只許本塵人提告而勸律其外各塵段方當革弊厘正之時本塵提納亦不可許」
- 62) 日省錄. 정조 10년 3월 24일, 「近來生齒日蕃民產漸直以其食之者衆而權利多端故耳九塵則自京兆出禁五塵則使塵人提納者法意有在其後各塵名色不勝其繁亂塵之禁一用九塵之例以江民所訴觀之村嫗之戴來片麵者皆入於亂塵其他可以類推當禁者固當依前禁之至於追後零瑣加出之塵輒用九塵之例皆自京兆出禁則民何以措手足乎貢市堂上及該署提調爛加商確往復京兆一遵舊式恐合事宜從之又啓言承文院或有時急舉行之事不可遠處關外今方借入於尙衣院朝房而至於別爲建設難以猝辦毋論關內外必得空乘之公廩然後可以咨接而聞舊弘文館今方空虛可合移接云請使郎廳看審後自本院草記舉行從之」
- 63) 卞光錫 (2001). *의의 책*, p. 187.
- 64) 日省錄. 정조 12년 1월 8일, 「內外魚物塵鞋塵衣塵烟草塵市民等所懷皆以爲亂塵滋多依法典嚴禁云矣」
- 65) 日省錄. 정조 12년 9월 8일, 「言衣塵市民金景哲上言以爲… 今年正月駐輦下詢時渠等敢陳亂塵之弊則下教漢城府平市署各別禁斷渠等提告男人於京兆照律懲治官決之下如前恣行乞令京兆永罷男人設塵之弊云矣」
- 66) 正祖實錄. 정조 32년 1월 25일.
- 67) 日省錄. 정조 20년 11월 30일, 「綿子塵樺皮塵烟草塵衣塵市民以爲亂塵勿禁後失業乞復舊資生云」
- 68) 日省錄. 정조 22년 1월 4일, 「魚物塵綿子塵烟草塵衣塵市民等以爲亂塵勿禁後舉皆失業復舊資生云」
- 69) 日省錄. 정조 23년 3월 22일, 「內外魚物塵眞絲塵雜鐵塵綿花塵長木塵鉢里塵內外匙塵樺皮塵衣塵烟竹塵烟草塵雉雞塵清蜜塵鞋塵簇頭里塵內貫器塵市民等所懷以爲一自通共以來市民日就蕭條乞依前禁亂塵俾保安業事」
- 70) 자료검색일 2009.3.27, 자료출처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 71) 備邊司謄錄. 순조 3년 윤2월 12일, 「且於年前自本司分付該署使應役塵民酌量捧稅於列肆散賣之類俾補應公之費… 今番詢摸係是臨御後初舉」
- 72) 日省錄. 철종 14년 1월 15일, 「衣塵市民等… 街路破衣商輩聚黨稱塵自恃強暴該塵所給分稅比前爲十分之一依

舊例 破衣各坐市分稅每朔一兩式收捧事也… 分稅事自有舊例破衣商之橫奪減給在所當禁奉公元塵不可不念請令平市署及漢城府照例嚴飭允之」

- 73) 承政院日記. 고종 1년 5월 1일, 「破衣商民等以爲各項弊衣本與衣塵混同賣買矣近自衣塵都實專利又爲加設分稅每朔一兩式勒捧特爲別立塵號錄於市案事也此有前俊訟卞破衣商之歸於落科者屢矣置之」
- 74) 日省錄. 순조 19년 1월 18일, 「…衣塵市民等以爲 紬緞一種專屬…」; 日省錄. 순조 21년 1월 19일; 日省錄. 순조 24년 2월 2일; 日省錄. 순조 25년 1월 14일; 日省錄. 순조 26년 1월 14일; 日省錄. 순조 27년 1월 14일; 日省錄. 순조 29년 2월 2일; 日省錄. 순조 31년 1월 13일; 日省錄. 순조 32년 1월 10일; 日省錄. 순조 33년 1월 24일; 日省錄. 순조 34년 1월 27일; 日省錄. 현종 1년 1월 7일; 日省錄. 현종 2년 1월 15일.
- 75) 日省錄. 현종 3년 2월 10일, 「右議政朴宗薰啓言頃因貢市民詢摸苧布兩塵之海南布門布相訟事白水青布兩塵之西洋布唐布分屬事衣塵之紬緞衣主賣事令平市署論報後稟處之意覆啓分付矣該署今纔報來而海南布門布布昨年既有廟堂決給今不必銷刻西洋布唐布既非市案現載之種又非土產恒有之物不須梗屬一塵只令隨分互賣爲宜紬緞衣則通共之後亦不必專屬衣塵而發賣漸多該塵之弊敗滋甚應役則自如不可無軫念之道姑以此一種爲主物不害爲蘇殘之政該署報辭如此並依此施行大抵此輩之紛拏計在專利利專於己則害歸於人理勢之所不能免其在一視均平之義有難偏聽而曲施此後如或不悛復售爭端則斷當嚴繩並以此意請分付大王大妃教從之」
- 76) 日省錄. 고종 28년 2월 17일, 「衣塵市民等以爲紬緞一種依床鞋絲樺四塵例特爲禁亂」